

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04.10]
(제정) 2023.04.10 조례 제1900호

관리책임부서명 : 체육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940-4833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[스포츠클럽법](#)」 제3조에 따라 파주시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과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스포츠클럽”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「[스포츠클럽법](#)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파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“지정스포츠클럽”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[법 제9조](#)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.
- “공공체육시설”(이하 “체육시설”이라 한다)이란 파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[법 제3조](#)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스포츠클럽 육성의 목표와 방향
-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
-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·지원에 관한 사항
- 스포츠클럽 기반시설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사용료 감면) ① 시장은 [법 제3조](#) 및 「[스포츠클럽법 시행령](#)」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-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·강습·훈련: 100분의 100이하
-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·강습·훈련: 100분의 80이하

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보고·검사)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·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감면 및 지원 대상 제외)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제5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2023. 4. 10. 조례 제1900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 제10조제1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·강습·훈련

② 제10조제1항제2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 「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
